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7 (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18. 11. 19

○ 회부일 : 2018. 11. 20 (의안번호 : 18-108)

2. 제출이유

지역내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제3조)

○ 고독사 예방계획 매년 수립(제5조)

○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수립에 활용(제6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7조~8조)

-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제9조~제11조)

※ 조례안은 본칙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예산조치 :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조치 필요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기간:'18.10.11일~'18.10.31)

○ 부패영향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 영향분석 평가 : 권고사항 있음

- 권고사항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라는 문구의 삽입 필요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유무

○ 최근 언론보도와 우리구 실태조사 통계 등을 볼 때 노인층과 중장년층의 증가 등으로 주거 취약지역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과 고독사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상황을 맞아 사회적고립가구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는 물론 현실에 부합한 각종 지원사업이 요청되는 사회환경을 맞아 이건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제정 가능 사무인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거나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이여야 할 것입니다.

○ 이건 조례안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사무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위임한 사회보장 사무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참고자료)

○ 아울러, 이건 조례안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근거한 주민복지 증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의 사무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이건 조례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사무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일 뿐 아니라 기초지방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 유무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강동구가 2017.8.9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 총 4개구가 우리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경우 광양시, 대구광역시, 부산중구, 서산시 등 4개 시·군·구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참고로,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는 전국 17개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조문의 구성체계 및 내용 등 적정여부

○ 이건 조례안은 14개 본칙 조항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로서의 구성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조례안 용어의 정의, 예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조문의 내용을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와 비교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으며, 조문의 용어와 문장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이건 조례안 작성시 우리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타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성 여부

○ 이건 조례안 사무의 경우 실태조사, 심리상담, 안부확인, 긴급의료지원, 방문간호, 주민모임 운영,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타 기관과 연계, 일자리 알선 등으로 향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 인력의 활용, 기존의 사업과 연계예산 활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검토 종합의견

○ 위와 같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 조례 제정 가능 사무인지 여부,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 유무, 조문의 구성체계 및 내용 등의 적정여부,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 가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건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구청장은 이건 조례안이 독거노인 가구를 포함하는 조례인 만큼 향후 집행과정에서 우리구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조례 제정후 상위 법령의 개정이나 상황의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적기적시에 조례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6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